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07호)

2025. 4.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상훈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2. 25.
3. 회 부 일 : 2025. 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업공개(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허수성 청약을 실시하고 주식을 단기매도 함에 따라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아니하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홍콩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일정기간 이상 공모주 보유를 약정하고 투자를 확약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장기 투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1조의2 신설, 제124조제2항 및 제174조제1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기업공개(IPO) 시 발행인이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수요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주권의 수량 일부를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1조의2(주권의 사전 모집 또는 매출) ①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입희망 가격, 물량 등의 수요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제1항의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주권의 수량 일부를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권을 취득한 자는 주권의 취득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최근 IPO 동향을 살펴보면, IPO 시장은 2021년 주가 상승, 유동성 증가 등에 힘입어 기업 수와 공모금액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도 LG에너지솔루션을 중심으로 그 활황세가 이어졌으나, 이후 IPO 공모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1] 코스피·코스닥시장 IPO 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코스피	기업수	7	7	5	14	4	5	7
	공모금액	7,136	9,152	21,122	163,658	131,455	10,870	18,468
코스닥	기업수	70	66	65	75	66	77	70
	공모금액	18,985	22,949	24,304	33,426	24,857	22,562	20,467
합계	기업수	77	73	70	89	70	82	77
	공모금액	26,120	32,101	45,426	197,084	156,313	33,432	38,935

주: 스펙·리츠·코넥스 신규 상장, 스펙합병상장, 재상장, 코스피 이전상장 제외

(자료: 금융위원회)

- IPO는 공모가 산정과 공모주 배정 등을 위한 일련의 절차로 구성되며, 공모가는 통상 기업실사(펀더멘탈)와 수요예측(시장평가)을 기반으로 주관사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결정함.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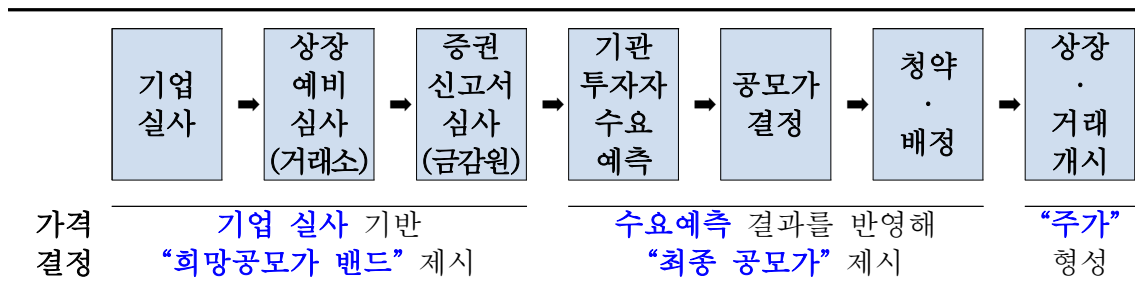
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이하 "기업공개"라 한다)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다.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 "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

- IPO 절차는 크게 ① 기업 실사 → ② 상장예비심사 → ③ 증권신고서 심사 → ④ 기관투자자 수요예측⁴⁾ → ⑤ 공모가 결정 → ⑥ 청약·배정 → ⑦ 상장·거래 개시 등으로 이루어짐.

[표2] IPO 절차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IPO 제도 개선방안”, 2025. 1.)

- 먼저, 발행사는 주식 인수 및 IPO 제반 업무를 담당할 증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여 주관사를 선정하고, 주관사는 발행사를 대상으로 기업 실사를 실시한 후,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를 거치게 됨.
- 주관사는 공모희망가격을 제시⁵⁾하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희망 매수가격 및 수량 등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발행사와 주관사는 수요예측 결과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최종 공모가를 결정함.

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수요예측”이란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공모함에 있어 공모가격(무보증사채의 경우 공모금리를 말한다)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공모예정기업의 공모희망가격(무보증사채의 경우 공모희망금리를 말한다)을 제시하고, 매입희망 가격, 금리 및 물량 등의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 5) 추정 적정가격의 일정 범위(예: ±15%)

- 이후 주관사는 청약을 접수받아 배정을 하게 되며, 모집·매출 완료 후 거래소가 상장을 승인하고 매매거래를 개시함.

□ IPO 시장은 적정 공모가 산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단기차익 목적의 투자보다 기업가치 기반 투자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동안 우리나라 IPO 시장의 경우 단기차익 목적의 IPO 참여의 과열과 공모가 산정에 왜곡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기관투자자들은 단기차익 목적으로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수요예측 참여 시 높은 가격을 제시⁶⁾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사모펀드·일임사⁷⁾의 참여 증가 현상이 과열 분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⁸⁾

[표3] IPO당 평균 수요예측 참여건수 및 경쟁률 현황

(단위: 개)

구분	수요예측 참여건수(평균) ¹⁾						수요예측 경쟁률(평균) ²⁾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코스피	740	1,000	1,226	728	1,213	1,831	417:1	830:1	1,124:1	553:1	177:1	445:1
코스닥	852	1,080	1,279	991	1,526	1,875	615:1	874:1	1,205:1	853:1	973:1	808:1
전 체	841	1,074	1,271	976	1,507	1,871	596:1	871:1	1,193:1	836:1	925:1	775:1

주1) IPO당 수요예측 참여건수, 참여기관별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재산의 종류를 구분하여 다수건으로 신청 가능

주2) IPO당 수요예측기관 희망수량 : 배정된 공모주 수량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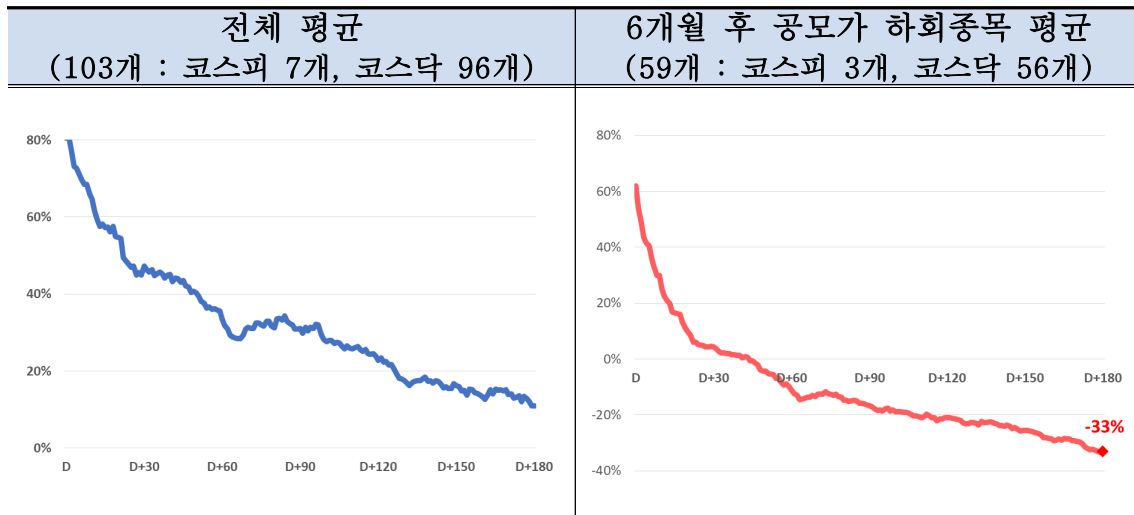
6)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IPO 77건 중 49건(약 64%)에서 수요예측 참여물량의 90% 이상이 공모가 밴드 상단초과 가격을 제시하였음.

7)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적정 공모가 발견 기여도가 낮다는 평가

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IPO 제도 개선방안”, 2025. 1.

- 또한, 수요예측 과열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쳐 기업가치 기반이 아닌 단기차익 목적의 투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기관투자자 역시 상장일에 단기매도⁹⁾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됨.

[표4] 2023년~2024년 상반기 IPO 직후 주가변화



주: 공모가 대비 상승률(코스닥+코스피)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IPO 제도 개선방안”, 2025. 1.)

- 이에, 개정안은 IPO 시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일부 적격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할 수 있도록 “사전수요예측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수요를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공모가 산정이 보다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기관투자자의 중·장기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IPO 시장이 기업가치 투자 위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의 비합

9)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IPO 77건 중 74건(약 96%)에서 상장일 기관투자자는 “순매도”

리적인 과열현상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홍콩, 싱가포르, 유럽 등에서도 도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2022년 12월 「IPO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과 2025년 1월 「IPO 제도 개선방안」을 통하여 사전수요예측 제도와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표5] 홍콩의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투자자 접촉	- Road Show 전에 코너스톤 투자자와 접촉하여 정보 비공개 약정 체결 후 투자설명서 초안 제공
가 격	- 코너스톤 투자자는 향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을 수용
보호예수	- 6개월 이상의 보호예수 의무 부여
이익제공 금지	- 수수료 등 금전적 이익 제공, 다른 IPO 건에서의 물량배정 약속, 풋백옵션 부여 등 직·간접적인 이익 제공 금지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IPO 제도 개선방안”, 2025. 1.)

- 한편, 개정안은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면서 현행법상 증권신고서 수리 전 모집·매출 금지,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전 증권 거래 제한, 정당한 투자설명서 사용 및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등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증권신고서 수리 전 모집·매출의 금지(제119조제1항¹⁰⁾),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전 증권 거래 금지(제121조제1항¹¹⁾)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신고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한 정당한 투자설명서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제124조제2항¹²⁾), 미공개중요정보의 특정 증권 거래를 위한 이용을 금지(제174조제1항¹³⁾)하고 있음.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1조(거래의 제한) ① 제120조에 따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②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2.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예비투자설명서(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덧붙여 적은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3.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 그런데, 개정안은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특정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위의 규정을 배제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와 현행법상 규제가 상충될 소지가 있음.

○ 이에 증권신고서 규제, 정당한 투자설명서 사용 의무,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등의 규정을 배제함으로써 사전수요예측 제도와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기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기관투자자에게 정보 획득 및 공모주 물량의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다른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둘째, 개정안은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 투자자 참여 대상기관과 코너스톤 투자자의 보호예수 의무기간(6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정하는 기간)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증권
신고서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제도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법률로 정하거나 하위법령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사전수요예측 제도와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에 따른 불공정거래 및 이해상충 예방을 위한 사항을 하위법령과 금융투자협회 규정 등을 통해 규율하겠다는 입장임.

[표6] 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 관련 구체화방안

분류	구체화 필요사항	구체화 방안
공 통	▶ 공시 이전 정보제공에 따른 미공개정보거래 우려	▶ 사전 정보제공 기관투자자 명단 등 관련 자료의 기록·보관 의무화 → 사전예방 및 관리강화
코너스톤 투자자	▶ 코너스톤투자자로 계열운용사 선정시 특혜(인기 IPO), 리스크 떠넘기기(비인기 IPO) 이슈 가능성	▶ 관계인수인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정금지
	▶ 보호예수기간 종료 직후 대량 물량출회로 가격변동 확대 우려	▶ 분할 보호예수 제도화 (예 : 40% 6개월, 30% 9개월, 30% 12개월 등)
	▶ 주관사의 적정 공모가 산정 노력 저해 (코너스톤투자자에 의존)	▶ 도입 초기에는 수량을 제한 (예 : 기관투자자 배정분의 20%)
사전수요 예측	▶ 수요예측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 (실무자간 유선문의 등 애매한 사례 발생 가능성)	▶ 비공식 사전수요예측 행위 방지 등을 위해 폭넓게 규정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IPO 제도 개선방안”, 2025. 1.)

- 셋째, 개정안 제121조의2제2항은 발행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일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신규 공모주 일부를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9조14)는 “모집”과 “매출”을 각각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 권유 등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사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IPO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모집”과 “매출”을 “청약의 권유”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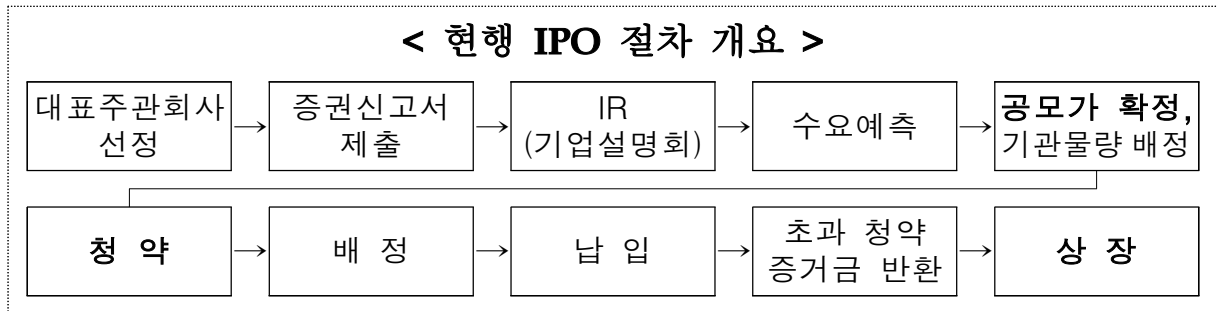
02)6788-5111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IPO 공모주 청약 및 배정 절차¹⁵⁾



① **(사전준비)** 발행사는 **상장예비심사청구 2개월 전까지** 주식 인수 및 IPO 제반 업무를 담당할 증권사와 대표주관계약 체결(인수업무규정 §3④)

- 주관사는 발행사의 경영실적·영업·재무사항 등을 점검하고 수요예측 및 공모가 협의 등을 진행

② **(신고서 제출)** 발행사는 거래소 상장적격성 심사결과를 통보(상장 예비심사 청구일로부터 45일 이내)받은 후 **증권신고서 제출**

- 주관사의 기업실사를 기초로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산정된 주당 희망공모가격 (**Band**), 모집·매출 주식수 등 발행조건 제시

③ **(IR)** 주관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후 수요예측 전까지(2주간)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를 진행하여 **IPO에 대한 관심 제고**

- * 주요 자산운용사와는 증권신고서 제출 직후 one on one 미팅, 그 외 다수 기관투자자 등 대상으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이후 대규모 IR 실시

④ **(수요예측)** 주관사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희망 매수가격 및 수량 등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수요예측 실시

- 인터넷(주관사 홈페이지)를 통해 **2일간** 진행*하며,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 외에는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모두 참여 가능

- * 해외 IR 시에는 1~2주간 다양한 방법(인편·우편·유선·E-mail·Fax 등)으로 진행

- ** 미청약·미납입, 의무보유확약위반 등 사유 발생시 자율규제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

- 기관투자자 **유형별**(자산운용사, 연기금, 저축은행, 기타 국내외기관 등)로 나뉘어서 접수 받고,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산·자기자본·펀드설정규모** 등 추가정보 수집

1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2022. 12. 19.

- ⑤ **(공모가확정) 수요예측 결과**(가격대별 신청현황, 경쟁률 등) 등을 고려하여 발행사와 주관사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 결정
- 주관사는 실권위험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를 낮추려는 유인이 있는 반면, 발행사는 자금유입 규모가 커지는 높은 공모가 선호
- ⑥ **(기관배정) 기관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배정물량을 할당한 후 각 그룹 내에서 참여기관별 가중치를 적용, 최종 배정수량 결정**
- 의무배정 물량 우선할당(하이일드펀드 10%, 코스닥벤처펀드 30% 등) 후 수요예측 참여가격·수량, 참여자 질적특성(의무보유확약기간, 운용규모, 투자성향, 참여실적 등) 등을 고려, 배정
 - * 주관사가 복수인 경우 각 주관사 수요예측 결과를 하나로 통합하여 배정하거나, 주관사별로 물량을 나누어 각각 배정
- ⑦ **(청약·배정·납입) 주관사는 2일*간 청약을 접수(중복청약 금지)받고, 통상 청약일로부터 2영업일내 배정 공고 및 주금 납입**
- * 우리사주조합은 1일(청약 초일),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는 2일간
 - 일반투자자는 청약금액의 50%를 증거금*을 납부하며, 대개 50%까지는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나머지 50%는 균등배정
 - * 청약증거금 부과는 자율이나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청약 불이행 방지를 위해 청약증거금을 징수하고, 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 면제
 - 주관사는 청약증거금을 한국증권금융에 별도로 예치한 후 납입기일에 주금으로 대체하고 초과 청약증거금은 반환
 - 일반투자자에게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미지급
 - 기관투자자는 납입 기일까지 배정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주금과 함께 납입
- ⑧ **(상장) 모집·매출 완료 후 거래소가 주식분산요건 등을 확인하여 상장 승인** 하고 매매거래 개시